- 목 차 -

1.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유예 신청시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지해야하나요?·· 2

2.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 ····· 2

3.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납기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?····· 3

4. 납기유예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3월~5월분 전기요금을 모두 납기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?····· 3

5. 신청이 불가능한 고객은 없나요? ····· 4

6. 복지할인(정액) 고객의 경우 신청없이 일괄 적용은 안되나요?····· 4

7. 납기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이사, 해지 등 고객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 ····· 5

8.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소상공인의 납기유예 금액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제출하는 금액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?····· 5

9. 납기유예를 적용받은 집합건물은 왜 지정계좌로만 수납이 가능한가요?·· 6

Q1 **자동이체 고객은 납기유예 신청시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하나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단독계약 고객의 경우 해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납부유예 신청시점에 따라 전기요금이 기존 납기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동이체 출금을 원치 않는 고객은 납기 7일 전까지 해당 지사 담당자에게 별도로 전화주셔야 기존 납기일에 출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□ 집합건물 고객의 경우 부분수납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자동이체를 해지하여야 합니다.

Q2 **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: sminfo.mss.go.kr (온라인)
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

※ 참고 : 중소기업통합 콜센터(☎ 1357)

Q3 **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납기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미납요금이 있는 고객이라도 체납 납기일(납기경과 후 2개월) 이전까지 납기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.

□ 다만, 체납 납기가 경과한 고객은 전기공급정지 사유를 해소한 후에 납기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4 **납기유예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3월~5월분 전기요금을 모두 납기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원칙적으로 당월 요금에 대해 납기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.

□ 예를 들어 말일 납기일 고객의 경우 4월 말일까지 신청시 3월~5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납기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.

Q5 신청이 불가능한 고객은 없나요?

<답 변 요 지>

□ 납기일 선택제, 납기 변경, 통합청구, 분할납부 중인 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□ 또한 기존에 납기유예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받았던 요금을 완납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Q6 복지할인(정액) 고객의 경우 신청없이 일괄 적용은 안되나요?

<답 변 요 지>

□ 납기유예 의사가 없는 고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통한 적용이 원칙입니다.

Q7 **납기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이사, 해지 등 고객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납기유예 중 이사정산 접수 시 납기유예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납기유예된 전기요금은 정산분에 합산되어 일괄 청구합니다.

Q8 **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소상공인의 납기유예 금액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제출하는 금액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관리사무소는 '집합건물내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' 제출시 전체 관리비(전기요금) 부과내역도 첨부로 제출해야합니다. 따라서 관리비 부과내역과 제출한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Q9 **납기유예를 적용받은 집합건물은 왜 지정계좌로만 수납이 가능한가요?**

<답 변 요 지>

□ 소상공인 개별점포나 아파트 개별세대의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청구·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등은 납기유예 대상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납부하려면 지정계좌이체 방식만 가능합니다. (지로 납부 불가)